

등록번호	항공기술과-1220
등록일자	2013. 09. 02
결재일자	2013. 09. 02
공개구분	비공개(5)

주무관	항공사무관	과장	정책관
김종무	이민영	이성용	2013. 9. 2. 권용복
협조자			

정비프로그램 개발지침 제정(안)

주요 검토사항	
정 책 중 요 도	
민 원·갈 등 가 능 성	
기 관 간 이 건 가 능 성	
홍 보 대 책 필 요 성 (홈페이지 등록 필요성)	
서 민 생 활 관 련 성	

항공법 제1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정비규정에 포함되는 정비프로그램을 항공운송사업자가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을 고시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.

항공안전정책관
항 공 기 술 과

정비프로그램 개발지침 제정(안)

1. 제정이유

- 항공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3조에 따른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을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필요한 안내지침을 항공사에 제공하여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
- * (정비프로그램) 항공기의 예상 가동률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할 계획 정비요목과 점검주기를 서술한 문서로서 운영자는 제작사 제공 정비프로그램 정보와 운영경험에 근거한 정비프로그램을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아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제공, 이에 따라 정비가 수행됨을 보증 책임

2. 주요 내용

- 항공운송사업자 정비프로그램 개발 근거 및 제·개정 방법
 - 항공기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국 또는 제작사가 제공한 MRB Report, MPD 및 운영자 경험 등을 근거로 개발
- 정비프로그램의 주기조정 기준, 제한사항 및 신뢰성 분석방법
 - 정시점검 수행 경험과 표본 항공기 지정 등 주기조정을 위한 기준 및 제한사항과 신뢰성 분석을 통한 주기연장 입증자료의 제공, 운영경험이 부족한 경우에 분석자료 대체방법 등 규정
- 정비프로그램의 주기조정 절차 및 입증자료 안내
 - 제작사 MPD 또는 신뢰성 분석에 의한 주기연장 절차 및 주기연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운영자가 제출할 세부 자료
- 그 밖에 정비프로그램의 우선 적용 방법 및 최신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

3. 기대 효과

- 통일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항공기의 운영자가 정비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정부의 인가기준도 명확히 할 수 있음
- 운영자의 정비경험에 따라 항공기의 점검주기가 연장되는 경우, 정비 비용 절감 및 운영효율 증대로 항공기 안전성과 경제성 최적화 가능
- 국가가 정비프로그램 검토 및 승인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개발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ICAO 상시평가(CMA)에 완벽 대응

4. 참고사항

- 관계규정 : 항공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3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협 의 : 국내·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(3.14, 5.3)
- 규제심사 :
 - 국무총리실 규제대상 심의완료('13.6.19, 규제대상으로 판정)
 - 부처자체심사 완료('13.7.19)
 - 국무총리실 예비심사 완료('13.8.23)
- 기 타(첨부) :
 - 정비프로그램 개발지침 제정안
 - 국무총리실 예비심사 확인증